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공임상교수요원 법적근거 및 대학의
공공보건의료사업 보조근거 마련〉

■ 성일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315호)

2024. 1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성일중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6.
3. 회부연월일 : 2024. 11.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 진료사업, 임상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보건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분야, 지역 및 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 확보와 재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임상교수요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후단·제4항 및 제17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립대학치과병원에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이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14조(임상교수요원) ① 치과병원에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을 둔다. <후단 신설>	제14조(임상교수요원) ① ----- ----- ----- ---. 이 경우 임상교수요원으로서 제7조제6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임상교수요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③ (생략) <신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과병원의 공공임상교수요원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7조(출연금 등) ①·② (생략) <신설>	제17조(출연금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치과병원이 제7조제6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
---	---

1. 공공임상교수제의 법적 근거 마련

공공임상교수제는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임상교수인바, 국립대병원에서는 기존 임상교수와 별도 트랙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담당하는 공공임상교수를 채용하여 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에서 순환근무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립대학 치과병원에서는 아직 공공임상교수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음.

< 대학병원별 공공임상교수 정·현원 현황 >

	구분	합계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2022년	정원	150	18	15	14	7	17	15	19	15	15	15
	현원	23	7	1	-	-	8	-	3	-	3	1
2023년	정원	150	18	15	11	6	28	13	16	14	14	15
	현원	28	5	2	-	-	11	-	4	-	5	1
2024년 (11월)	정원	50	8	4	2	-	19	2	5	-	7	3
	현원	32	4	1	-	-	13	2	5	-	6	1

제안이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보건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분야, 지역 및 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바,

동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임상교수제를 국립대학 치과병원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공공보건의료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학 치과병원이 공공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임상교수 임용 및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만, 의료 현장에서의 공공임상교수의 다양한 역할을 고려하여 개정안 제14조제1항의 “전담하는”을 “담당하는”으로 수정할 것을 제시함.

기획재정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공공임상교수제 지원은 코로나19 대응 등 시급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것으로, 인건비는 국립대학 치과병원 부담 원칙¹⁾에 따라 자체 운영 필요한바, 안 제14조제4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임.

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7조(출연금 등)

② 치과병원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부가 보조하고, 치과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사용되는 경비와 차관의 원리금상환의 경비는 치과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2. 치과병원에서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보조근거 마련

개정안은 국립대학 치과병원에서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²⁾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³⁾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⁴⁾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규정만으로도 공공보건의료 수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 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행기관인 국립대학 치과병원에 대해 예산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보조사업에 대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동 개정안은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⁵⁾에서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사업 및 금액 등을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 보조금 지급 근거가 없더라도 보조금 지급은 가능함.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도 민간보조 사업의 경우 편성요건의 하나로 ‘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를 명시⁶⁾하고 있으며,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평가항목에서도 보조사업 법적근거를 고려하고 있음.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6)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5. p.102

<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평가항목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의 필요성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3.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4. 보조사업 법적 근거	
1-5. 사회적가치 실현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2-2. 보조사업 집행 및 관리의 적정성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2-4. 보조사업 관리에 관련한 규정 마련	
2-5. 자체 사업관리 노력	
2-6. 평가결과 이행여부	
2-7. 실집행 실적	

이상을 고려할 때, 국립대학 치과병원이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보조 근거 마련은 행정작용의 안정성·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자의적 보조금 편성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공공보건의료사업⁷⁾은 치과병원에 대한 수익 기여도가 낮아, 정부 지원이 있어야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8

7) 취약계층 의료지원, 도서지역 구강검진 사업 등